

대전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나111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법정대리인 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정교순, 최정기, 양병종

4.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2. 1. 28.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8가단21790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29/11.24 소유권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12. 21. 접수 제17521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051/1,448 소유권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12. 21. 접수 제175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97/1,448 소유권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2. 9. 접수 제142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6. 1. 접수 제45388호로 마친 가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29/11.24 소유권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6. 1. 접수 제45389호로 마친 가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051/1,448 소유권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6. 1. 접수 제45391호로 마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F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11. 5. 접수 제1564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2. 13. 접수 제175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성년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권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0. 5.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유증하는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사망하면 어차피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인륜에 반하는 소송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전자정법원 2017년 단1215 사건에서 2018. 2. 14. 원고에 대해 성년후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J가 선임된 사실, 같은 법원 2019년 단10296 사건에서 2019. 6. 4. 원고의 성년후견인을 변호사 J에서 변호사 B로 변경하는 심판이 있었고, 위 각 심판에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대리권제한 사항으로 부기되지 않은 사실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성년후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는 데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의사무능력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D와의 이 사건 제1매매, 피고 C와의 이 사건 제2 매매 및 이 사건 증여, 피고 주식회사 F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각 계약(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D, C, 주식회사 F은 위 각 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무효인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축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을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① 원고는 2011. 6. 29. K 병원에서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은 후 2016. 10.경 입원하기 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2. 14. 원고에 대해 성년후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4. 10. 28. 이루어진 치매중증도평가 검사인 전반적 퇴화 척도 검사(GDS1)

)에서

5단계 초기의 중증인지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같은 날 이루어진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2) 결과에서 7점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같은 병원에서 2015. 11. 13.

이루어진 GDS 검사 결과 5단계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와 K-MMSE 검사 결과 5점을 받았다.

③ 제1심 법원 감정인인 G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는 ‘원고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4. 10. 28.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정상적인 인식과 판단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매매하는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 즉 의사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 을가 제6, 13, 19, 22, 23,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제1심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당시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의미하고(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그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률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제1심 법원 감정인인 G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도 2020. 5. 22.자 사실조회회신에서 ‘GDS 5단계에 해당하는 자는 인식력과 예기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단, 치매의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이 곧 의사능력이 일률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감정인의 임상적 단계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C와의 이 사건 제2매매 이전인 약 5년 전인 2010. 5.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C 사이 녹취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유언을 한 후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매매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피고 C로 하여금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음성에서 원고의 명료하 의사가 드러난다(피고들은 을가 제22호증 녹취파일이 2015. 10.초에 녹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2매매 및 증여계약 당시 원고가 결정해야 할 내용에 특별히 복잡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있었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2016. 10.경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피고 C와 지내면서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그 의무기록을 보면(갑 제4호증의 2), 원고는 2015년까지 타인의 간병 없이 마을 회관이나 교회, 미장원, 목욕탕을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피고 C는 동석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 이 사건 제1매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리한 법무사 L과 이 사건 제2매매 및 증여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리한 법무사 H는 각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15. 2.경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시 대출심사업무를 담당한 M도 ‘원고가 자서에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실 정도였으나 의사능력이나 설명숙지능력은 정상이어서 대출을 시행하였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내지 15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우무인 위조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제1, 2매매와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제출한 각 확인서면(을가 제13호증의 8, 제15호증의 5, 제17호증의 7)에 압날된 우무인은 원고의 것이 아니므로 위조된 확인서면에 터 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무인이 원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사무소 직원이 출장을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서면 양식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가 추후 법률사무소에서 누군가의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위조되었다는 위 각 확인서면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관 혹은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앞서 살핀바와 같이 원고가 그 의사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 이상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등기자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지은, 판사 이효선, 판사 박상준

[목록]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 304㎡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조 스투트즙 단층주택 26.45㎡

세멘브럭조 스투트즙 주택 29.75㎡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 1448㎡

끝.

1) Global Deterioration Scale의 약칭으로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증상이 심하다. 총 7단계로 평가되며, 1단계는 인지장애 없음, 2단계는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 3단계는 경미한 인지장애, 4단계는 중등도 인지장애, 5단계는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6단계는 중증의 인지장애, 7단계는 후기 중증의 인지장애로 구분한다.

2)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는 치매 척도 검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인지기능을 ① 시간에 대한 지남력(5점), ② 장소에 대한 지남력(5점), ③ 기억능력(3점), ④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5점), ⑤ 기억회상능력(3점), ⑥ 언어 및 시공간적 구성능력(9점) 등의 항목으로 나누고, 총 30점 중 피검자가 항목별로 획득한 점수의 합계에 따라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총점이 14점 이하이면 중증 치매 상태를 의미한다.